

『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(용도지역)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5월 25일

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지방 2급 인노천 하천 정비기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정 하천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, 구미 도시관리계획결정(용도지역)을 변경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□ 용도지역 변경

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
- 용도지역 변경 : 자연녹지지역 ⇒ 제2종일반주거지역
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내용

구 분	위 치	용 도 지 역	규 모	비 고
기 정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자 연 녹 지 지 역	3,323m ²	지방2급하천 인노천
변 경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	3,323m ²	주거지역

□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
- 위 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일원(지방2급하천 인노천)
- 면 적 : 376,412m²(113.8천평)
- 사 업 비 : 26,261백만원
- 사업기간 : '04. 6. 8 ~ '07. 6. 9
- 시 행 자 : 문성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류진석
- 수용인구 : 1,620세대(4,860명)

□ 인노천 현황

구 분	시 종 점	연 장(m)			면 적(m ²)			비 고
		가정	변경	변경후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시설결정 (인노천)	문성동1046-1번지 ~괴평동 544-1번지	3,600	-	3,600	123,328	증)9,451	132,779	
사업구역 (인노천)	문성동1046-1번지 ~문성동 616-1번지	960	-	960	24,000	감)3,367	20,633	사업구역
						증)9,451	33,451	사업구간

※ 하천폐지 : 3,367m²
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 : 3,323m²(용도지역 변경 대상)
- 녹지 존치 : 44m²

라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인노천이 구미 도시계획 결정('78. 2. 14)시에는 원호 -문성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-8호선과 평행하게 계획 되었으나 경상북도의 지방 2급 하천 인노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 직강의 지양 및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천 수계가 변경됨에 따라
- 기존 하천시설부지 중 일부(3,323m²)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견 채택(위원회 의견)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(용도지역)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』

의견서

1. 사업명 : 구미 문성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 변경 사업

- 위치 :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
- 용도지역 변경 : 자연녹지지역 ⇒ 제2종일반주거지역

2. 용도지역 변경 내용

구분	위 치	용 도 지 역	규 모	비 고
기 정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자 연 녹 지 지 역	3,323m ²	지방2급하천 인 노 천
변 경	고아읍 문성리 609-2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	3,323m ²	주거지역

※ 하천폐지 : 3,367m²
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편입 : 3,323m²
- 녹지 존치 : 44m²

3. 의견 사항

- 구미 도시계획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인노천이 경상북도의 지방2급 하천 인노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 직강의 지양 및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천 수계가 변경됨에 따라
- 기존 하천시설부지 중 일부(3,323m²)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 고자 하는 사항으로써

⇒ 녹지 공간 확보 방안 모색

- 하천 폐지 면적 3,367㎡ 중 3,323㎡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녹지공간은 44㎡만 존치하는 당초 안은 심사 결과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
- 인근 주민(입주민)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.